

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(II)

金炳極* · 孫泰休** · 權泰喜***
尹秉鶴**** · 金剛石***** · 馬順子*****

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(II)

Kim, Byung-Kuck, M.D.* · Son, Tae Hyu, M.D.** · Kwon, Tae Hee M.D.***
Yoon, Byong Hak, M.D.**** · Kim, Kang Sueck, M.D.***** · Mah, Soon Cha, M.D.*****

生命保險의 大衆化에 따라 災害保障特約 販賣가 擴大되고 또 交通事故, 自殺 等 事故가 增加一路에 있어 高度障害(廢疾) 障害關係 約款을 醫學的 立場에서 再檢討하고 實務面에서 잘 比較되는 勞動災害補賞保險과의 差異點을 좁히기 爲해 障害等級 4,5,6級에서 各各 3項씩 9個項을 新

設하므로써 保障의 幅을 넓히고 또 保障을 받을 수 있는 事故內容을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表에 의해 明文化하였다.

또한 約款上 表記된 醫學的 用語는 契約者나 被保險者가 解得하기 쉽게 日常的인 用語 또는 註釋을 加하였다.

*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
Daehan Life Insurance Co. Ltd.

** 第一生命保險株式會社
Jae Il Life Insurance Co. Ltd.

***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
Dong Bang Life Insurance Co. Ltd.

**** 興國生命保險株式會社
Hung Kuk Life Insurance Co. Ltd.

***** 大韓教育保險株式會社
Dae Han Kyouk Life Insurance Co. Ltd.

***** 東亞生命保險株式會社
Dong Ah Life Insurance Co. Ltd.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불의의 사고 분류표</p> <p>가.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(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)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.</p>	<p>불 의 의 사 고 분 류 표</p> <p>가.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(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)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. *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(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. 1. 1. 시행)에 의한 것이다.</p>	<p>“우발적인 외래의 사고”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상태를 명문화</p> <p>분류항목의 근거명기</p>

Kim, Byung Kuck, et al. :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(II)

분 류 항 목	분 류 항 목	분류번호	
1. 철도에 의한 사고	1. 철도에 의한 사고	E 800~E 807	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중 "손상 및 중 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" 번호신설
2. 자동차 교통사고	2. 자동차 교통사고	E 810~E 819	
3. 자동차 비교통사고	3. 자동차 비교통사고	E 820~E 825	
4. 기타 도로교통 기관사고	4.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	E 826~E 829	
5. 수상교통 기관사고	5. 수상 교통기관사고	E 830~E 835	
6.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	6.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	E 840~E 845	
7.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	7.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	E 850~E 858	
8.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② 살모넬라성 (Salmonella 성) 식중독 ③ 세균성 (포도상구균성 Botulinus 성)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 이거나 대장염	8.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·증기에 의한 불의의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② 살모넬라성 (salmonella성) 식중독 ③ 세균성 (포도당구균성 Botulinus 성)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	E 860~E 869	"보조분류"에 의거 8, 9 항을 합하여 1 개항으로 함
9.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	9. 불의의 추락	E 880~E 888	
10. 불의의 추락	10.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	E 890~E 899	
11.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	11.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과도의 고온 및 저온 ② 고기압,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③ 여행 및 운동 ④ 기아(굶주림) 갈증, 불량 환경에의 노출 및 방치중의 기아(굶주림), 갈증	E 900~E 909 (E 900~E 901) (E 902) (E 903) (E 904)	
12.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과도의 고온 ② 고압 및 저압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애 ④ 기아,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중의 기아, 갈	12. 기타 불의의 사고.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	E 916~E 928 (E 927)	
13. 기타 불의의 사고.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			

① 과로 및 격동중의 과로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애 또는 정신신경장애가 있는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③ 기타 물질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	① 과로 및 격렬한 운동 13. 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, 연하(삼키는 기능) 장애 또는 정신신경 장애 상태가 있는 사람의 호흡기관 폐쇄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식품의 흡입 및 섭취 ② 호흡기관의 폐쇄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기타 물체의 흡입 및 섭취	E 910~E 915	“보조분류”에 의거 13 항목 ②③을 독립항목으로 설정
14.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.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	14.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중에 당하는 환자의 재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	E 870~E 876	“보조분류”에 의거 조정
15.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	15.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	E 960~E 969	전염병은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없는 질병이므로 삭제
16.법적 개입 (다만 “처형은 제외한다”)	16. 법적개입 (다만 “처형은 제외한다”)	E 970~E 978	
17.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.전염병 예방법 제2 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	17.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	E 979~E 990	

등급	나. 장애등급 분류표	등급	나. 장애등급 분류표	
1 급	신체장애 1.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때 2.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때 3. 중추신경제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때 4.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때 5.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되지 못하게 될때 6.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	1 급	신체장애 1.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때 2.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 3. 중추신경제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.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때 5.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 6.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	문장의 복잡화로 불

Kim, Byung Kuck, et al. :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(II)

<p>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7.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,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8.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발목 이상을 잃었을때</p> <p>1.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된때</p> <p>2.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</p> <p>3.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중에서 제3급의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</p> <p>4.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</p>	<p>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7.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때</p> <p>8.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9.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1.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2. 10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3.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4급의 4부터 8까지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때</p> <p>4.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때</p>	<p>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개호로 구분</p> <p>윗문장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</p> <p>제4급 1, 2, 3호 신설에 따라 순연</p>
<p>3 급</p> <p>1. 한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</p> <p>2.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</p> <p>3. 한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4.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5. 10 발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6.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</p>	<p>3 급</p> <p>1. 한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</p> <p>2.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3. 한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</p> <p>4.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5. 10 발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6.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</p>	<p>용어의 국어화</p>

-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
- 4 급**
1. 한팔의 3대관절중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2.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3.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
 4.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
 5.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6.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7.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
- 5 급**
1.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
 2.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

- 를 영구히 남겼을 때
- 4 급**
1. 두눈에 뚜렷한 시력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
 2.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
 3. 중추신경계, 정신 또는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제한을 받을 때
 4.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5.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6.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
 7.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
 8.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9.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
 10.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
- 5 급**
1.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
 2.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

1급장애 보다는 장애상태가 약하나 종신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1, 2, 3호 신설

용어의 국어화

용어의 국어화

팔 다리의 기능장애 상태에 따른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1, 2호 신설

Kim, Byung Kuck, et al. :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(II)

<p>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 <p>3.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 <p>4.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상실하였을때</p> <p>5.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</p>	<p>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</p> <p>3.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4.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 <p>5.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 <p>6.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</p> <p>7.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상실하였을때</p> <p>8.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</p>	<p>용어의 국어화</p> <p>2급장애보다는 장애상태가 약하나 청력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6호신설</p>
<p>급 1.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 손가락 또는 3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 <p>2. 한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3.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잃었을때</p> <p>4.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	<p>6 급 1.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</p> <p>2.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</p> <p>3.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때</p> <p>4.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또는 3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</p> <p>5.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</p>	<p>팔 다리의 기능장애 상태에 따른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1, 2, 3호 신설</p>

(주 기)

1. "평생간호"
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
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
 것을 말한다.

2. "시력을 잃은것"
 시력이 0.02이하 (시력
 의 측정은 만국식 시력
 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
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)
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
 경우를 말한다.

3. "말 또는 씹어먹는것의
 장애"
 가. "말의 기능을 완전
 영구히 잃은것"이란 다
 음의 경우를 말한다.
 1) 어음구성기능 장애
 로서 구순음, 치설음, 구
 개음, 후두음 중 3종류
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 하고
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

있을때

6.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
 발가락을 잃었을때

7.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
 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
 지 못하게 될때

(주 기)

1. "평생간호"
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의
 유지가 불가능 한것을 말한다.

2. "일상생활 동작의 제한"
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
 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
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
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3. "시력을 잃은것"
 시력이 0.02이하 (시력의 측정은
 국제식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
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) 로
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
 한다.

4. "시력의 뚜렷한 장애"
 시력이 0.06이하 (시력의 측정
 은 국제식시력검사표에 따라 한
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)
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
 말한다.

5. "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
 것"
 가. "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
 잃은것"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
 한다.
 1)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
 해로서 구순음(口 ㅂ ㅍ) 치설
 음(ㄴ ㄷ ㅌ) 구개음(ㄱ ㅋ) 후
 두음(ㅇ ㅎ) 중 3종류 이상의 발
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
 지 않는 경우

중추신경제, 정신, 복
 부장기등의 장애로 일
 상생활동작에 제한을
 받을 경우에 대한 보
 장을 도입함으로써 "평
 생간호"와 구분하기
 위하여 신설

용어의 평이화

고도장애 보다는 낮은
 장애 상태에 대한 보장
 을 도입함으로써 고도
 장애와 구분하기 위하
 여 신설

고도장애가 아닌 장애
 상태의 도입에 따라 조
 정

문장의 평이화

<p>2)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</p> <p>3)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나. "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" 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2)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</p> <p>3)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나. "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" 물과 미음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용어의 평이화</p> <p>문장의 단문화</p>
<p>4 "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"</p> <p>주파수 500 1,000 2,000 4,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, b, c, d 데시벨로 했을때 $1/6(a+2b+2c+d)$의 값이 80 데시벨 이상 (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)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6. "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"</p> <p>가. "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것"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, 치설음, 구개음,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나.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것"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p>7.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</p> <p>주파수 500, 1,000, 2,000, 4,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, b, c, d 데시벨 (청력 검사 단위) 로 했을때 $1/6(8+26+2C+d)$ 값이 80 데시벨 이상 (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)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p>8. "청력에 뚜렷한 장애"</p> <p>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 이상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것)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고도장애상태 보다 낮은 장애상태에 대한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고도장애와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</p> <p>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보다 낮은 청력장애 정도의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</p>

5. “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것”이란 비연골 1/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

6. “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”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(팔은 견관절(어깨), 주관절(팔꿈치)관절 및 손목다리는 고관절(무릎)관절 및 발목)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7. “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”
 가. “척추의 뚜렷한 기형”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.

나.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”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/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.

9. “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”
 코뼈의 1/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냄새 맡는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

10. “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”
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[팔은 견관절(어깨), 주관절(팔꿈치)완관절(손목), 다리는 고관절(골반), 슬관절(무릎)족관절(발목)]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11. “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”
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/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.

12.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”

가. “척추의 뚜렷한 기형”
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.

나. “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”
 경추(목뼈)가 완전 강직된 경우 흉추(가슴등뼈)이하가 전후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/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.

문장의 단문화 및 평이화

문장의 단문화

부위표현의 전문용어 통일 및 평이한 용어의 설명삽입

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낮은 팔다리 장애정도의 보장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

문장의 단문화

문장의 단문화 평이한 용어의 설명삽입

<p>8. "손가락의 장애"</p> <p>가. "손가락을 잃은것" 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.</p> <p>나. "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" 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 모지는 말절의 1/2) 이상을 잃은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(모지는 지절간관절)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13. "손가락의 장애"</p> <p>가. "손가락을 잃은것"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.</p> <p>나. "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"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(첫째 손가락은 말절골의 1/2)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(첫째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)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문장의 단문화 용어의 평이화</p> <p>용어의 평이화, 문장의 단문화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</p>
<p>9. "발가락의 장애"</p> <p>가. "발가락을 잃은것" 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것을 말한다.</p> <p>나. "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" 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/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(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)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14. 발가락의 장애</p> <p>가. "발가락을 잃은것" 발가락 전부를 잃은것을 말한다.</p> <p>나. "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"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의 1/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이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(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)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문장의 단문화</p> <p>문장의 단문화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</p>
<p>10. 신체의 동일부위</p> <p>가.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(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, 견관절이하)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.</p> <p>나.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(발가락, 발목이하, 무릎관절이하)를</p>	<p>15. 신체의 동일부위</p> <p>가.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(어깨)이하;(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, 어깨이하)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.</p> <p>나.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(골반)이하(발가락, 발목이하, 무릎이하, 골반이하)를 모두 동</p>	<p>용어의 평이화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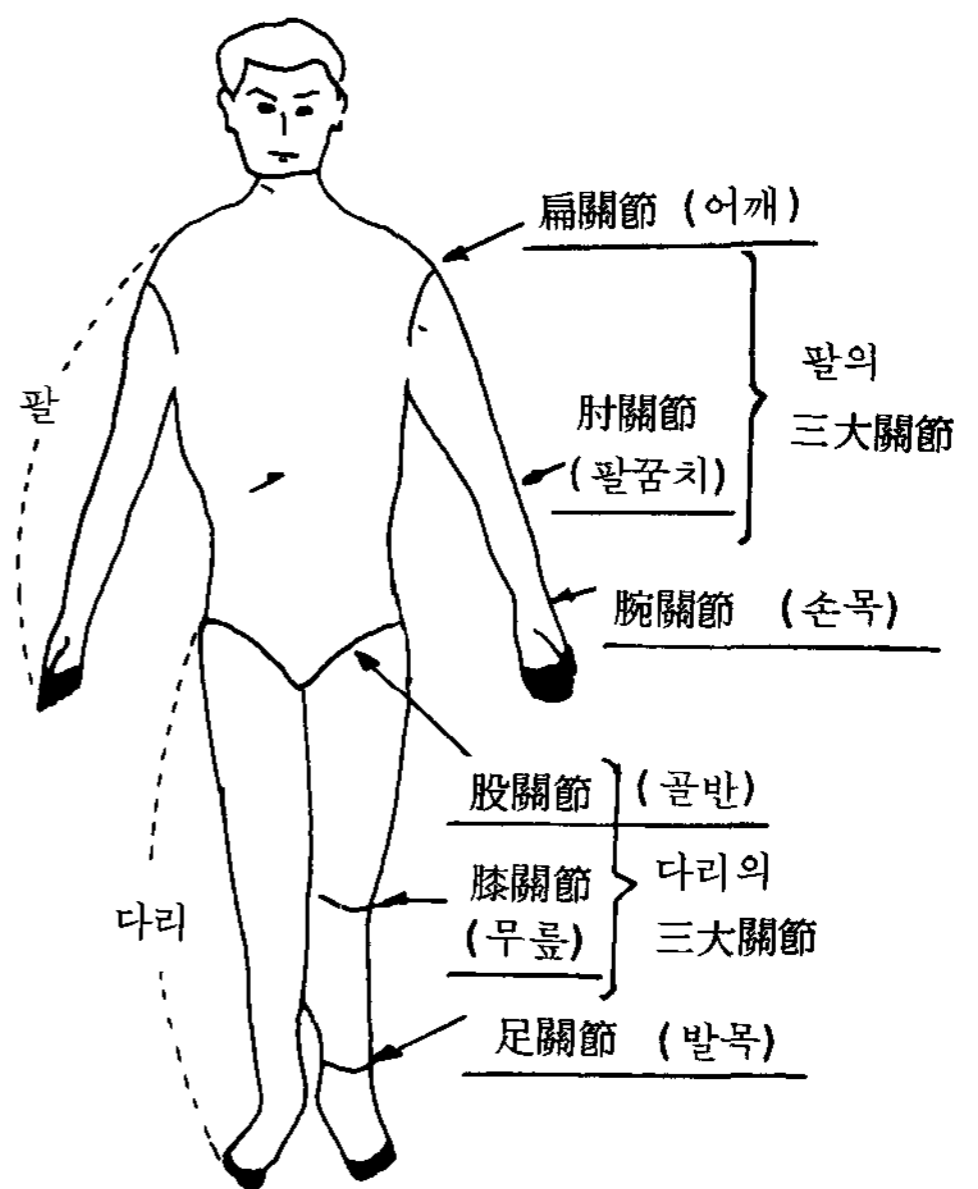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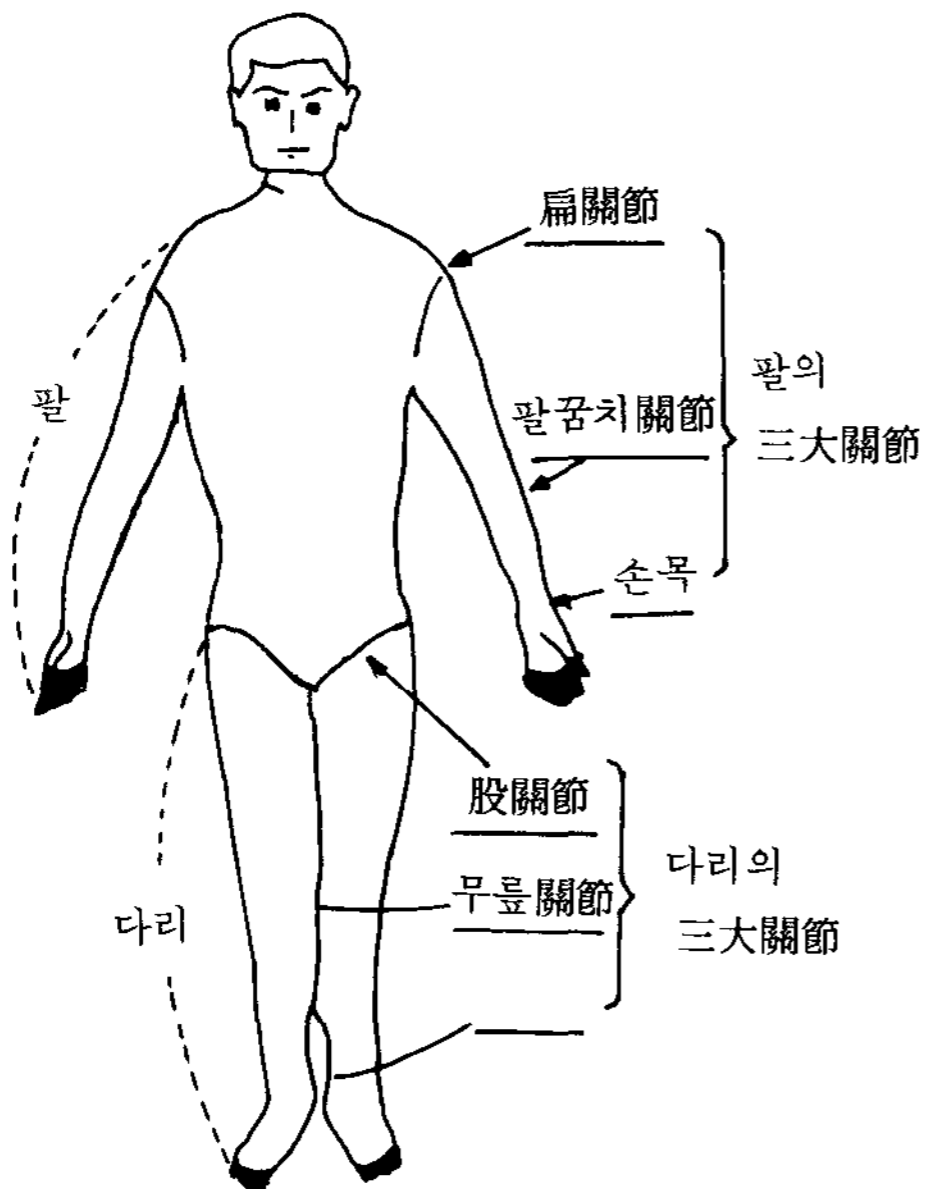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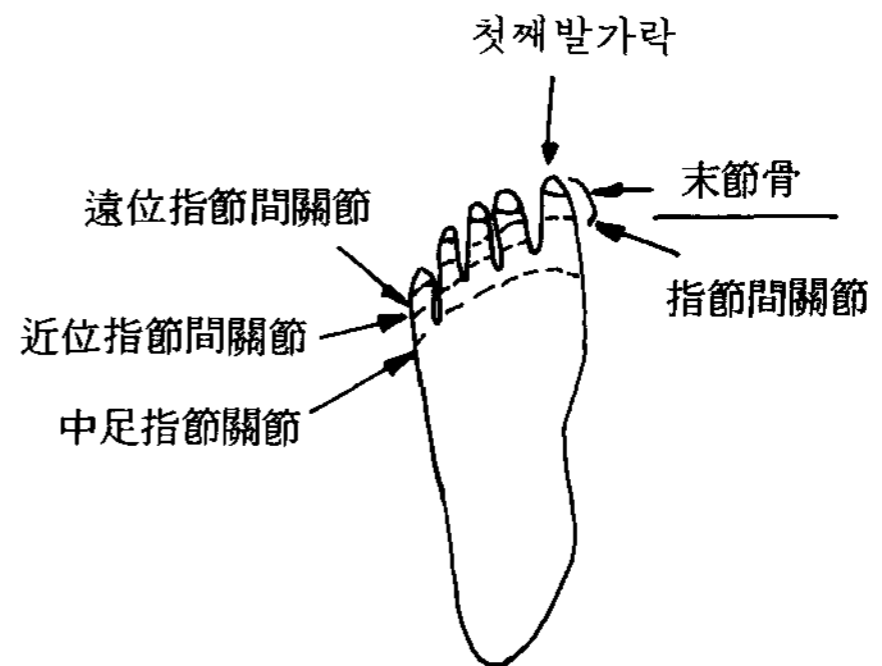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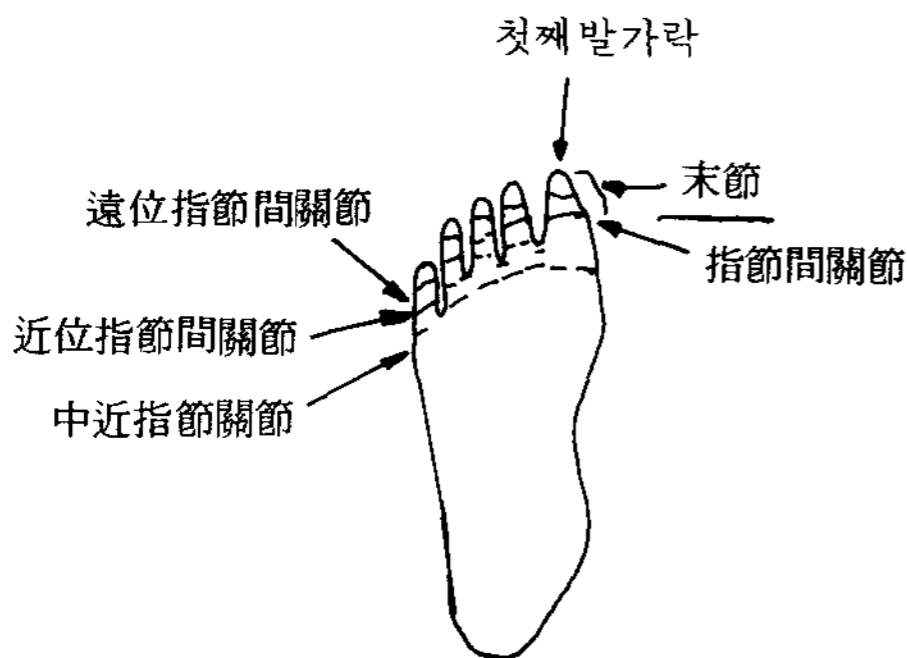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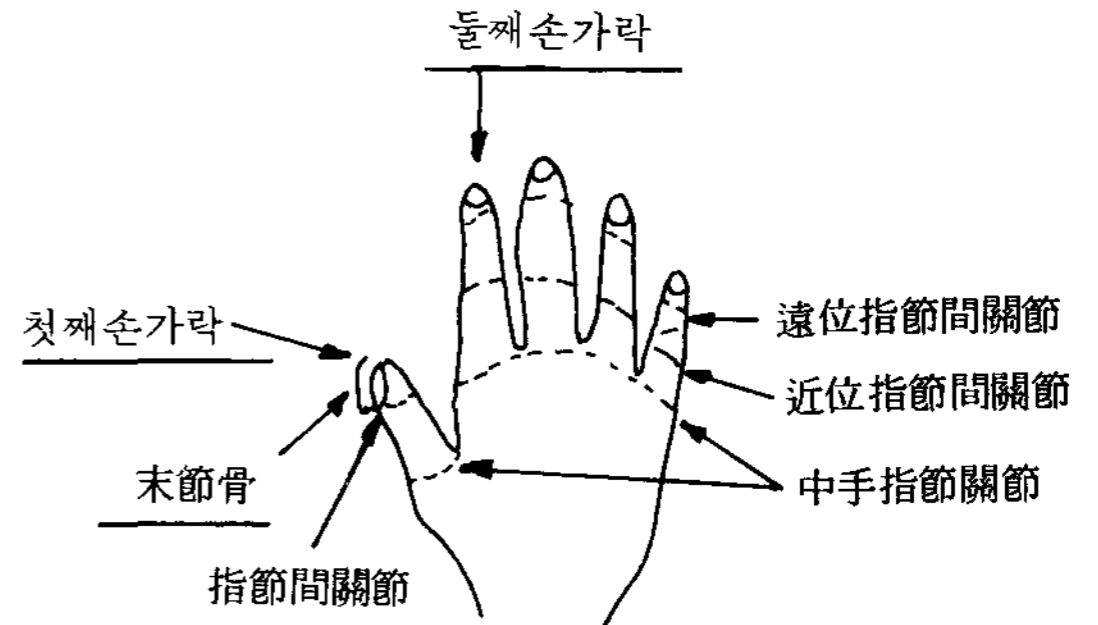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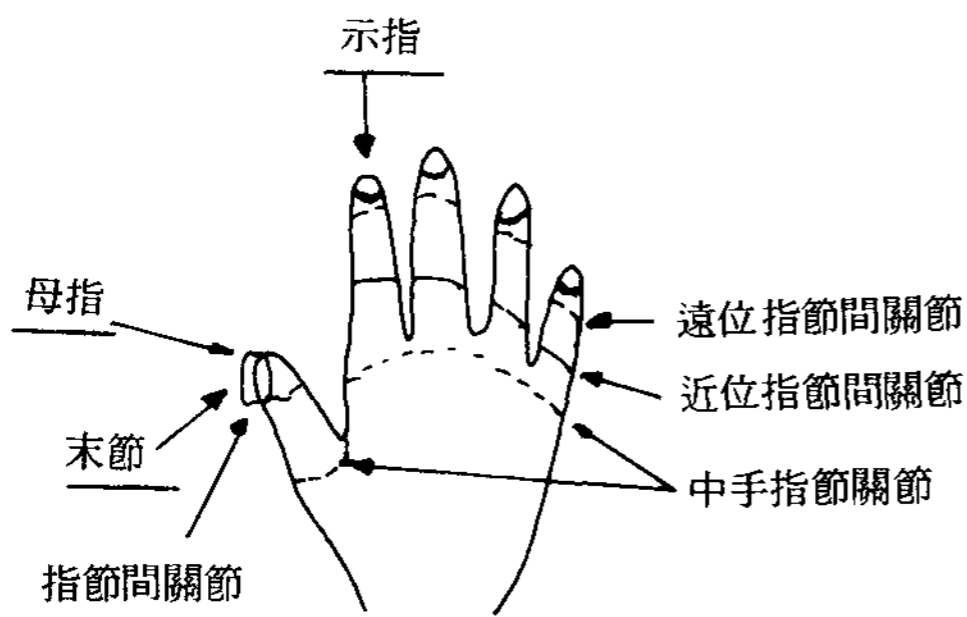
金炳極 外 : 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(II)

<p>모두 동일부위라 한다. 다.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. 라.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. 마. 장애 등급표중 제1급의 5, 6, 7 또는 제 8 제2급의 1, 2, 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6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.</p>		<p>일부위라 한다. 다.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. 라.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 (목뼈)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. 마. 장애 등급표중 제1급의 5, 6, 7, 8 또는 9, 제2급의 1, 2, 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9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, 한팔과 한다리, 10 손가락 또는 10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.</p>	<p>평이한 용어의 설명 삽입 보장보험의 확대에 따라 순연</p>
---	--	---	---

신 체 부 위 설 명 도

현 행 (임의기재)

개 정 (안) 의 무 기 재



신체부위의 설명도를 해당약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함

- 용어의 평이화
-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
- 전문용어의 통일사용 및 평이한 용어의 설명 삽입